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가합110517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노현중

피고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희, 오명은

변론 종결2019. 7. 12.

판결 선고2019.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플랜트 설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기계·부품·소재산업 등의 자본재 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2. 26. C 주식회사가 발주한 'D발전소 1, 2호기 보일러 건설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보일러 건설공사 중 Yard Duct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4. 3. 5.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Yard Duct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3. 31.부터 2016. 9. 30.까지, 계약금액 10,78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한편 원고는 2013. 8. 30. E 등으로부터 위 보일러 건설공사 중 Inside Duct 제작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3. 10. 15. G에 이를 하도급하였다).

4. 역무 대행에 대한 책임

4.3 "을"(G, 이하 같다)은 본 공사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재하도급해서는 안 된다.

8. 계약 보증

8.2 계약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공사 준공일+60일로 한다.

9. 계약해제 또는 해지

9.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이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상당 기간의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직권으로 즉시 파기할 수 있다.

- 작업 내용이나 품질이 발주 사양서 기준에 미달하여 문제가 예상될 경우
- 공정이나 작업 준비가 현저하게 지연될 경우
- 2회 이상 검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갑"의 손실부문에 대하여 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을"의 귀책사유로 납기 내에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을"이 본 계약 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피고의 계약보증서 발급

피고는 G와 사이에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5. 피보증자(보증채권자) 원고, 주계약명 D플랜트 1호 및 2호의 Boiler Yard Duct 제작설치공사, 보증금액 495,000,000원, 보증기간 2014. 3. 5.부터 2016. 9. 30.까지로 된 계약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하고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G은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2014. 6. 16.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G의 계약체결 하에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현재 공사 진행률이 10%이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라. 원고의 계약 해제

원고는 2015. 12. 29. G에 'G이 약정한 보증금액의 50%에도 미달하는 계약보증서만을 제출하고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관리조치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납기가 지연되는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의 보증금 지급청구 등

원고가 2016.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49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7. 계약보증금 지급 거절 안내를 하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송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며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0. 최종적으로 계약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관련 사건의 경과

G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H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643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예비적으로 '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440,000,000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27. 'G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액이 6,628,646,918원인바 위 금액 전부를 G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G에 지급하거나 그 재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합계 8,151,113,916원으로 오히려 원고가 G에 1,522,466,998원을 초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H가 항소하였으나 2018. 8. 16. 항소가 기각되어(다만 항소심은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G에 1,514,594,071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1,078,800,000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2014. 6. 25.경에서야 위 금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495,000,000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제출하였고,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재하도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G이 2014. 5.경부터 무단으로 이 사건 공사를 재하수급인들에게 재하도급하고 2014. 6.경부터는 재하수급인들이 원고에게 직불요청을

하여 원고가 재하도급대금을 직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8.경부터는 G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조치 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가 G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시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G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12. 29. G에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며, 한편 G의 위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제작·납품 부분과 관련하여서만 1,514,594,071원을 초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공사 중 설치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2,299,180,08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G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액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을 최종적으로 거절한 2018. 3.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2014. 5.경부터 재하도급 금지를 위반하여 재하도급하고 납기도 지체하는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2014. 6. 16. G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여 피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증계약은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답변서 부분의 송달로써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B공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 조합원의 의무 이행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는 것은 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이 착오에 빠진 경우 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조합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볼 만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 직원 I는 2014. 6. 17. G 대표에게 '원고와 G 사이에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현재 공사 진행률이 10%이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2014. 6. 16.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메일 본문에 위 확인서 중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첨부한 발주처 공문(D 보일러 Inside 및 Yard Duct 제작 지연)에 명기된 지체상금(L/D)의 부과 통보와 같이 문제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하도급 관리의 부실로 현재 심각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위 I는 2014. 6. 19. G에 '계약 이후 제작 부진으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발주처에서 지체상금(L/D) 부과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 날인 후 3개월 이상 지나서 50%의 계약이행보험증권의 제출로써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피고는 G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4. 6. 25.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라) 한편 G은 2014. 5.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J 등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5. 위 J에 재하도급대금 55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4. 6.경부터 재하수급인들의 대금을 직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29. G에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G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관리조치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납기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계약해제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재하도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G이 2014. 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고 그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6. 5.경부터 재하수급인들에게 그 대금을 직불하고 있었던 점, 원고 직원 I는 G에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메일 본문에 위 확인서 중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발주처의 지체상금(L/D)의 부과 통보와 같이 문제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하도급 관리의

부실로 현재 심각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함께 첨부된 발주처 공문 제목에 Yard Duct 제작 지연도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G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 통지를 하면서 재하도급금지 위반을 계약해제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G의 재하도급 금지 위반을 G의 채무불이행 중 하나로 주장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G의 재하도급 금지 위반 및 재하도급대금 미지급, 발주처의 지체상금 부과 통보 등과 같은 사정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도급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보증하는 피고에게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보증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성 측정 등을 통한 보증계약의 체결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G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위반하여 재하도급하고 그 재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금을 직불하였으며 발주처에서 지체상금 부과까지 거론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G이 이 사건 공사를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여 이를 신뢰한 피고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도 G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만큼 원고 역시 G이 허위의 이 사건 확인서를 이용하여 피고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8. 12. 3.자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보증관계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위탁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보증채권자를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조합이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보증관계의 해소를 위한 보증 취소의 의사표시 역시 보증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등 참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보증계약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당시 G의 이 사건 공사 진행률이 10%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일 뿐, 그 때까지 G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전혀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제반 계약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아니며, 이메일에 기재된 지체상금 또한 이 사건 공사가 아닌 원고가 G에 별도로 도급한 Inside Duct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유형

판사허정룡

판사신동호